

#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8.

발 의 의 원 : 윤영애 의원

강성환 의원

김대현 의원

김태원 의원

박우근 의원

이만규 의원

이시복 의원

이영애 의원

이태손 의원

임태상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구·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·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
(안 제9조제2항)

- 나.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원센터 및 구·군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
(안 제9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)

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”를 “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이하 “시 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구·군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이하 “구·군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구·군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원센터 및 구·군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<u>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</u>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<u>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이하 “시 지원센터”라 한다)</u>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구·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(이하 “구·군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구·군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(현행 제9조제2항과 같음)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원센터 및 구·군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# 관계법령

##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 약칭: 발달장애인법 )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(장애인서비스과) 044-202-3347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발달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
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
나. 자폐성장아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"보호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
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
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

사람

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**제3조(발달장애인의 권리)**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·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**제5조(국민의 책무)**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

· 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(보호자를 포함한다)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1. 대구광역시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8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3월 18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복지국장 백운자)

### □ 제안이유

- 2019. 7. 31.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“대구광역시치매센터”의 관리·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,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개요
  - 운영장소 : 대구광역시 관내
  - 시설기준 :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(사무실, 회의실, 교육·세미나실 등 포함)
  - 인 력 : 8명 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직원 6명)

- 위탁범위 :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전반
  - 치매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
  -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
  -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
  - 치매관련 시설·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  -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  -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 등
- 민간위탁기간 : 2019. 8. 1. ~ 2022. 7. 31. (3년간)
  - ☞ 최초위탁 : 2013. 8. 1.
- 운영위탁금 : 589백만원 (2019년 예산 기준)
- 수탁기관 선정 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  - ※ 최초위탁 : 2013.8월~2016.7월, 2차위탁 : 2016.8월~2019.7월
- 주요 위탁 업무는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,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, 치매관련 시설·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,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,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등 임.
-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, 위탁기간은 2019. 8. 1.부터 2022. 7. 31.까지 3년간으로,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할 계획이며, 위탁에 따른 운영예산은 589백만원(기금 70%, 시비 30%) 정도임.